

대통령령 제 호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후단 중 “제24조제3항제3호”를 “제24조제3항제3호나목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3항제2호가목 중 “50원(액상제는 15원)”을 “70원(액상제는 20원)”으로, “500원”을 “700원(바이알, 앰플 등 단위제형별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 1회 소요비용 기준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약제: 구입금액+(상한금액-구입금액) \times 70/100”을 “약제는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.”로 하며,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는 구입금액

나. 2013년 2월 1일부터는 구입금액+(상한금액-구입금액) \times 70/100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약제:
구입금액+(상한금액-구입금
액)×70/100

<신 설>

<신 설>

4. (생 략)

④ · ⑤ (생 략)

3. ----- 약제
는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.

가. 2012년 2월 1일부터 2013
년 1월 31일까지는 구입금
액

나. 2013년 2월 1일부터는 구
입금액+(상한금액-구입금
액)×70/100

4. (현행과 같음)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